

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3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부동산중개업법개정(2000.1.28 공포, 법률 제6236호)에 따라 종전 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에서 규정하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조정의 절차, 조정의 처리방법 등 모법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2000. 7.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함

2. 주요골자

-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

3. 관계법령

- 부동산중개업법

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